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8.7.26.(목)

책 임 자		담 당 자	
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안 창 국(02-2100-2657)		최 성 규 사무관 (02-2100-2643)
	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이 윤 수(02-2100-2601)		오 승 준 사무관 (02-2100-2516)
	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 강 전(02-3145-7580)		김 진 국 부국장 (02-3145-7012)

제 목 :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관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

1. 개요

□ **금융위원회**(위원장 최종구)는 2018.7.26(목)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2018.4.11.~5.3까지 실시한 **부문검사 결과 조치안**에 대해 **의결**하였음

참고 : 삼성증권 배당사고 개요

◈ 2018.4.6. 9:30경 삼성증권㈜이 우리사주 조합원(2,018명) 계좌로 현금배당(주당 1,000원) 대신 동사 주식 총 28.1억주(주당 1,000주)를 입고

◈ 착오입고 직후 9:35~10:06(31분간) 동사 직원 22명은 총 1,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주문하여 이중 16명이 총 501만주를 체결시킴

⇒ 당일 오전 동사 주가가 전일종가 대비 최대 11.7%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미침

2. 주요내용

□ **삼성증권 및 임직원**은

①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**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**(法§24)와 **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**(法§27)를 위반하고

②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**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**(法§21) 등을 위반

□ 이에 따라 **삼성증권**에 대해 **'업무 일부정지 6월'*** 및 **'과태료 1억 4천4백만원** 부과'로 조치하고

*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('18.7.27~'19.1.26)

○ **前 대표이사 3명**은 각각 **'해임요구 상당**(2명)' 및 **'직무정지 1월 상당**(1명)'으로, **現 대표이사**는 **'직무정지 3월'**로 조치하였음

○ 기타 **임직원 8명**은 **주의~정직 3월로 조치**를 요구하였음*

* 주식매도 관련 직원 21명은 감봉~면직에 해당하나, 금융감독원이 배임·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('18.5.11)하였고, 삼성증권이 자체 징계('18.5.21)하였으므로 조치를 생략

□ 한편, **증권선물위원회**는 2018.7.18.(수) 제14차 정례회의에서

○ 삼성증권 배당사고 시 **자신의 계좌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** 중 상장증권 가격 등을 왜곡한 **13인**에 대해서는
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, 자본시장법)에 따른 **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**(法§178의2) **위반***을 이유로 각각 **2,250만원 또는 3,000만원**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**하였음

* 삼성증권 주가 등에 대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과 오해를 유발시키거나 상장증권의 가격을 왜곡한 혐의

※ 다만, 과징금 부과 대상자 총 13인 중 8인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 중(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위반, 컴퓨터 등 사용 사기, 배임 혐의)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 확정판결시까지 과징금 조치를 유예(유죄판결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, 무죄 판결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되는 것임)

※ **[참고1] 삼성증권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내용 종합**
[참고2] 삼성증권 및 임직원의 위반사실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참고1 **삼성증권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내용 종합**

제재대상	제재내용	조치권자
기관	○ 업무의 일부[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] 정지 6월 ○ 과태료 부과(1억 4천4백만원)	금융위원회
대표이사 (4명)	○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해임요구 상당) 2명 ○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직무정지 1월 상당) 1명 ○ 직무정지(3월) 1명	
임직원 (21명)	○ 정직(3월) 2명, 정직(2월) 1명 ○ 감봉 3명 ○ 견책 1명 ○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(주의) 1명	금융 감독원장
	○ 과징금 부과 13명(3,000만원 6명, 2,250만원 7명)	증권선물 위원회

참고2 **삼성증권 및 임직원의 위반사실**

가.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의 위반

□ 동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지배구조법 관련규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**충실하게 마련하지 못함**

○ **(업무매뉴얼 미비)** 우리사주 배당업무시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(업무매뉴얼)를 마련하지 아니함

○ **(전산시스템 설계 오류)** 조합원 계좌에 先입고(입금)한 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고(출금)하도록 **전산시스템을 거꾸로 설계**하고

-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업무가 동일 화면에서 진행되고, 배당주식과 배당금을 동일 셀에 표기하도록 **전산시스템을 잘못 설계**함

【입·출고 업무흐름 비교(정상사례 및 삼성증권 사례)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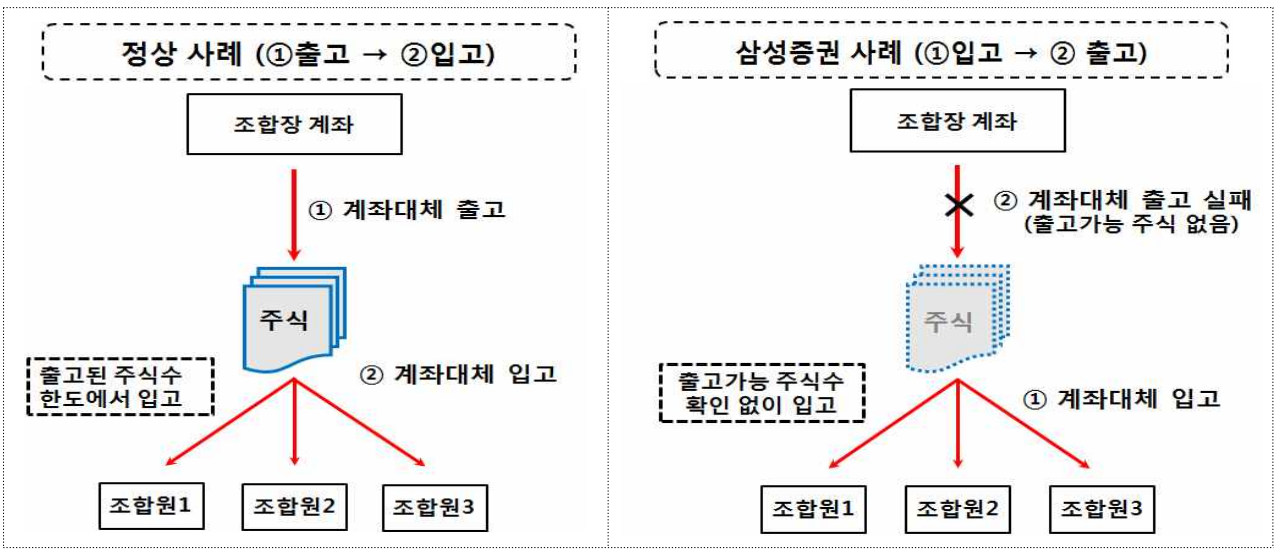

○ **(직무분리기준 미비)** 우리사주 배당업무 처리시 승인권한 분리의 **금액별 기준**을 제대로 규정하지 아니함

○ **(내부통제위원회 구성의무 위반)** 내부통제위원회를 지배구조법 시행일('16.8.1.) 유예기한('16.11.1.)로부터 **98일 지체**하여 구성함

나. 전자금융거래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

□ 동사의 담당직원들이 전자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**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**를 소홀히 함

○ 우리사주 배당 **담당자**는 우리사주 현금배당을 **주식배당으로 잘못 신청**하였고, **관리자**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**그대로 승인**함

【담당팀장의 우리사주 주식입고 승인화면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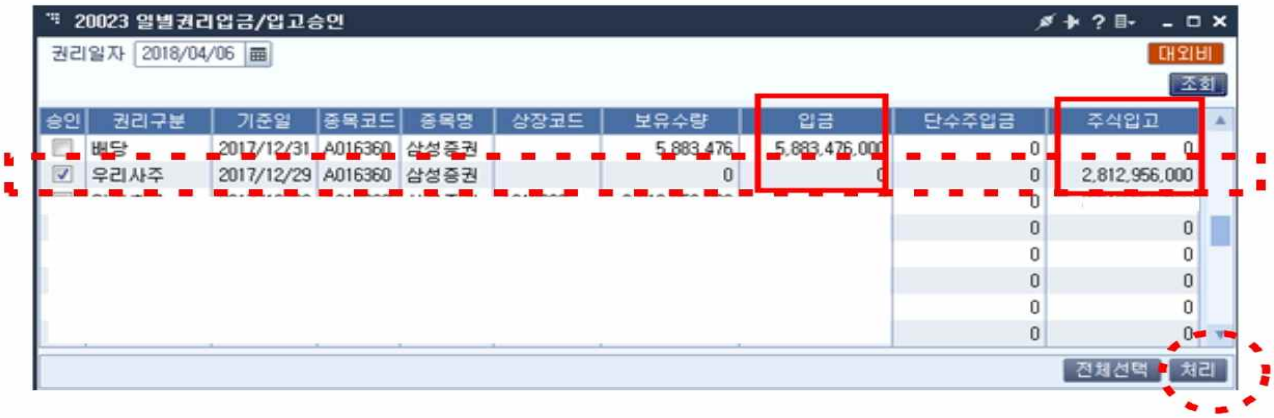

다.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 위반

□ 동사는 지배구조법에서 요구하는 **금융사고 등 우발상황**에 대비한 **위험관리 비상계획**을 마련하지 아니함

○ 이에 배당사고 발생직후 전 임직원에 대한 **사고내용 전파**가 **미흡**하고, 조합원 계좌에 대한 **매도주문 차단(37분)** 및 **입고주식 일괄출고(54분)** 등 대응조치가 지연됨

<참고> 삼성증권의 주요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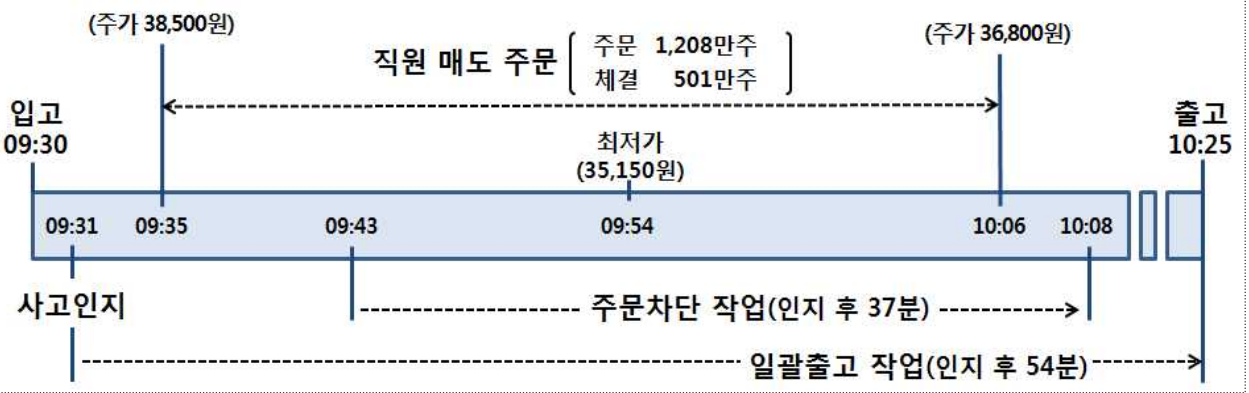

라. 전산시스템 테스트 실시의무 위반

□ 동사는 주전산 시스템 교체 사업을 추진('17.4.3. ~ '18.2.28.) 하면서 우리사주 배당 전산시스템에 대해 전산처리 정보의 **안전성** 및 **무결성**을 위한 **충분한 테스트**를 실시하지 아니함

마.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위반

□ 동사는 전산시스템 구축의 입찰 참가자가 **1사**(OOOOO㈜)임에도 **경쟁입찰**을 진행하여 OOOOO㈜를 업체로 선정함

○ 또한, 전산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**평가위원의 절반**(12명중 6명)을 선정대상 용역업체(OOOOO㈜) 직원으로 구성함

바. 착오입고 주식의 매도

□ 삼성증권㈜ 직원 21명이 자신들의 계좌에 주식이 잘못 입고된 사실을 알면서도 동사 주식 총 12,076,836주를 매도주문(이중 5,011,616주 체결)한 사실이 있음